

'04. 12. 20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7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일
- 상정일자 :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4. 12. 15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 제안 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확보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494명 ⇒ 2,512명 (증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3명 ⇒ 1,410명 (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 61명 (증 1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행정수요와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 먼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은

- 바이오산업 기반시설확충, 투자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원변동없이 2003. 1. 1일 바이오산업추진단 설치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 14명만 자체정원으로 흡수되고,
- 기타 기구존속기한을 2004. 12. 31일에서 2007. 12.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바이오산업추진단 현황

- 기 구 : 1단장 2과 5팀
- 정 원 : 26명(3급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7명, 7급 7명, 기능직 4명)
→ 이 중 한시정원은 14명임.
- 존속기한 : 2004. 12. 31일까지

- 또한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장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필요성에 따라 총 18명이 증원되는데,
 - 그 내역은 본청 12명, 사업소 5명, 도의회 1명이며,
 -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수의·연구사 5명, 기능직 2명 등임.

※ 부서별 증원현황

-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 3명(5급 1명, 6급이하 2명)
- 세무회계과 『복식부기팀』 신설 : 4명(5급 1명, 6급이하 3명)
→ 복식부기팀 정원 4명중 6급이하 3명은 자체정원조정 범위를 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득한 정원임.
-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신설 : 3명(5급 1명, 6급이하 2명)
-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인력 보강 : 5명(수의·가축위생연구사)
- 산림과 백두대간보호 업무 기능 보강 : 2명(6급이하)
-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력보강 : 1명(기능직 운전원)

□ 증원의 필요성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 세무회계과 『복식부기팀』 신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6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우리 도가 3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임.
- 또한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며,

- 구제역, 부르세라,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인력을 보강하는 것임.
- 아울러, 2003. 12. 31일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등 신규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인력을 2명 보강하는 한편, 도의회 업무용 차량 1대 신규구입에 따라 도의회에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임.
-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짐.
-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등 8개담당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라 총무과가 기존 5개담당에서 6개담당으로,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라 세무회계과가 기존 6개담당에서 7개담당으로 늘어나는 등 과조직이 비대해지고, 나아가 타실·국과 비교하여 자치행정국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특정조직의 비대화는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며, 특히 조직에 대한 지휘·통솔에 있어서 국·과장들의 리더쉽 및 능력발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인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즉,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확보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494명 ⇒ 2,512명 (증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3명 ⇒ 1,410명 (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 61명 (증 1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494명”을 “2,51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393명”을 “1,410명”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60명”을 “6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조례 제2723호, 2003. 1. 1) 제2조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4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93명</u></p> <p>2.~3. (생 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512명</u></p> <p>1. : <u>1,410명</u></p> <p>2.~3. (현행과 같음)</p> <p>4. : 61명</p>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p> <p>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04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 1. 1 조례 제2723호)</p> <p>제2조(한시기구)..... <u>2007년 12월 31일</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